

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9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조례의 근거법령인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서 규정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감면대상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정의하는 ‘저공해자동차’의 범위에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5조제4항에서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‘환경친화적 자동차’인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6호의 저공해자동차만이 해당하도록 개정함(안 제2조제3호).
- 나. 전자태그 인식 없이도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‘전자태그 부착자동차’에 대한 정의를 삭제함(안 제2조제4호 삭제).
- 다. 전자태그 부착 여부에 관계없이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6호의 저공해 자동차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감면하고자 함(안 제6조제10호).
- 라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제3종 저공해자동차 및 경유 자동차 중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를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(안 제6조제2항 삭제).

마. 안 제6조제2항 삭제에 따라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 혜택을 3개월간 유지하여, 기존 감면 혜택에 대한 신뢰를 일정기간 보호하고자 함(안 부칙 단서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2) 입법예고('20. 7. 30.~8. 19.)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가목 및 나목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.

3. “저공해자동차”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.

제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10. 제2조제3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2. (생략)</p> <p>3. “저공해자동차”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운행 경유자동차 중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</p> <p>4. “전자태그 부착자동차”란 전자태그가 부착되어 있어 눈 및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구별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.</p> <p>제6조 (혼잡통행료의 감면)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아니한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저공해자동차”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.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제6조(혼잡통행료의 감면)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아니한</p>

현행	개정안
<p><u>다.</u>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<u>10. 제2조제3호가목 중 제1종 저공해자동차 및 시장이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하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(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)</u></p> <p><u>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</u></p> <p>1. <u>제2조제3호가목 중 제3종 저공해자동차 및 나목의 자동차 중에서 시장이 저공해자동차로 인정하는 자동차(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)</u></p> <p><u>2. 삭제</u></p>	<p><u>다.</u>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0. 제2조제3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

비 용 추 계 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감면대상 확대(전국 1종·서울시 2종→전국 1·2종 저공해차량)에 따른 재정수입 순감소
- 감면대상 제외(3종 저공해차량 및 저공해화 차량)에 따른 재정수입 순증가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근 거
 - (세입감소) 감면대상 확대시 '20년 예상 감면액은, '19년 제1·2종 저공해차량에 대한 면제금액 12억원 대비 약 5억원 증가한 1,714,285천원
 - ※ 12억 × 10/7(서울 대 타지역 차량 남산 1,3호 터널 통행량 비율 = 7:3)
 - (세출증가) 감면대상 제외시 '20년 기준 50% 감면혜택을 받던 제3종 저공해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7,500천원 추가 징수 가능
 - ※ 일평균 제3종 저공해차량 통행량 30대×연평균 징수일 250일×감면액 1000원=7,500천원

- 비용추계기간 : 5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5년 간 저공해 차량 예상 감면액 변화 추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감면변화 추계(A-B)	변경 이전 징수 추계(A)	변경 이후 징수 추계(B)
2021	506,785	15,024,008	14,517,223
2022	506,785	14,680,370	14,173,585
2023	506,785	14,575,720	14,068,935
2024	506,785	14,298,618	13,791,833
2025	506,785	14,196,920	13,690,135
총 계	2,533,925		

4. 재원조달 방안(해당없음)

5. 작성자 : 교통정책과 최슬해(2133-2229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추계

- 2021년 추계액: 15,024,008천원(징수일: 252일)
 - '20년 일평균 통행량 및 유료차량 구성비 기준, 3년평균 유료차량 증감률 반영
 - 산출기준
 - 일반차량 : (31,374대 × 98.89%) × 92.16% × 2,000원 × 252일 = 14,411,038천원
 - 감면차량 : (31,374대 × 98.89%) × 7.84% × 1,000원 × 252일 = 612,970천원
 - ※ 산출내역 : '21년 일평균 유료차량 통행량 × 유료차량 구성비 × 혼잡통행료×'21년 징수일수

2. 향후 4년간 징수전망

(단위 : 천원)

기준년	'22년도	'23년도	'24년도	'25년도(추계)
추계액	14,680,370	14,575,720	14,298,618	14,196,920

※ 산출내역 : 기준년 일평균 징수예상액 × 3년 평균 유료차량 증감률 × 기준년 징수일수